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제도 안내



(아름다운 선거)



유권자가 참여하는
희망의 선거

선거과정과 선거관리가
공정한 선거

정당·후보자 모두가 승복하는
화합의 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년 3월 9일(수)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 02) 503-1114

www.nec.go.kr



목차

- 1. 제20대 대통령선거 3
- 2. 주요 선거 일정 4
- 3. 선거정보 제공 5
- 4.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6
- 5. 거소투표신고 7
- 6. 거소투표 절차 8
- 7. 거소투표 시 유의 사항 9
- 8. 사전투표 10
- 9. 선거일 투표 11
- 10. 투표 편의 12
- 11. 포상금 및 과태료 13
- 12. 정책선거 14

제20대 대통령선거

18세 이상(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의 사람은 3월 9일(수) 대통령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 18세 이상의 사람 중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제45조·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주요 선거 일정

- 2월 9일(수) ~ 2월 13일(일) : 거소·선상투표신고
- 2월 13일(일) ~ 2월 14일(월) : 후보자등록 신청
- 2월 15일(화) ~ 3월 8일(화) : 선거운동기간
- 2월 23일(수)까지 : 점자형 선거공보 발송
- 2월 27일(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거소투표신고자, 책자형 선거공보 및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 발송(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 3월 4일(금) ~ 3월 5일(토)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3월 9일(수) : 선거일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정보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 음성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양한 선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투표절차,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에는 그 내용이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있습니다.

또한 안내문의 내용을 음성으로 바로 들을 수 있는 CD도 제공합니다.

거소투표신고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은 2월 9일(수)부터 2월 13일(일)까지 5일간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절차

1.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2월 13일(일) 오후 6시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 발송) 합니다.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2월 27일(일)까지 신고된 거주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3. 받으신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3월 9일(수)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합니다.

거소투표 시 유의 사항

-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일 전일(2월 12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방해·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3월 9일(수)에 투표할 수 없다면 3월 4일(금) ~ 5일(토)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에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투표

선거일인 3월 9일(수)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투표 안내문 기재)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여권 등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거소투표용지를 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 편의

- 선거일에 중증장애인 등에게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 신청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의 가족이 보조하는 경우 1인도 기표소 입장 허용)
- 선거인 본인이 지명한 자가 없거나 1인인 경우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 사무원 중에서 2인이 되도록 선정하여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투표소에 후보자별 기표란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및 과태료

-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신고는 국번 없이 1390)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점자 일람표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정책선거

정당과 후보자는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여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여 투표하고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에도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평가합니다.

자 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 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 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ㅘ	ㅙ	ㅚ	ㅜ	ㅝ	ㅞ	ㅟ	ㅠ	ㅡ	ㅣ	ㅑ	ㅓ	ㅕ	ㅗ	ㅛ
약 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쌍받침			
약 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 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 장 부 호	.	?	!	,	-	~	*	“ ”	‘ ’						
	:	:	:	줄임표(...)											
영 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ㅊ, ㅊ,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